

# 국세기본법 · 국세징수법 분야



# I. 국세기본법/국세징수법 분야

## 1.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(기본영§26의2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세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관세(여행자 휴대품, 이사화물), 특별소비세·주세</li> <li>- Sur-tax(교육세·농특세) 포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세액 한도 :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지분 : 200만원 이하만 납부허용</li> <li>○ 신고분* :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</li> </ul> <p>* 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</p> <p>※ 세목별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left;">&lt;부가가치세&gt;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left;">&lt;종합소득세&gt;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left;">&lt;근로소득세&gt;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left;">&lt;관세&gt;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건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금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건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금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건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금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건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1%</td> <td>26%</td> <td>80%</td> <td>17%</td> <td>97%</td> <td>46%</td> <td>98%</td> <td>5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,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</p>	<부가가치세>		<종합소득세>		<근로소득세>		<관세>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81%	26%	80%	17%	97%	46%	98%	51%
<부가가치세>		<종합소득세>		<근로소득세>		<관세>																		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																	
81%	26%	80%	17%	97%	46%	98%	51%																		

**<개정이유>**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 허용

**<적용시기>** '08.10.1.이후 신고·납부분부터 적용

## 2.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(국기법§14③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실질과세원칙</p> <p>①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</p> <p>②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실질과세원칙 명확화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3자거래*(우회거래) 또는 단계거래**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·거래로 적용</p> <p>*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, 변칙과 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 회피</p> <p>** 2회이상의 제3자 거래</p>

### <개정이유>

####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

- 국세조세법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

### <적용시기> '08.1.1.이후부터 시행

### 3.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(국기법§85의6)

종 전	개 정
<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를 분석·가공한 통계자료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요구주체) 소관 상임위원회(재정경제위원회) 의결</li> <li>○ (요구목적) 세법 제정·개정법안 심사</li> <li>○ (제공형태)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통계자료</li> </ul>

#### <개정이유>

- 국세행정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와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조세정책의 품질 제고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부터 시행

### 4.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(징수영§26, 27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최저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만원</li> </ul>

<개정이유>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

5.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(징수영§5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·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</p> <p>○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·지자체 등이 계약대금 지급시 다음 방법으로 직접 체납 여부 조회 가능</p> <p>○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</p> <p>○ 세무서장에게 조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추가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○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 하는 경우</p> <p>○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한 조회 추가</p>

**<개정이유>** 수령할 계약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

**<적용시기>** 공포일 이후 대금지급분부터 적용

6.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(국징법§31, 징수령§3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금지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·침대·가구·주방구, 3월간의 식료와 연료</li> <li>○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</li> <li>○ 의료·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가구·약품, 기타 재료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금지재산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</li> <li>· 질병·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(불입액300만원이하)</li> <li>· 120만원 미만 예금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

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

- 채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·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\*은 기초생활보장 수단인 점을 감안

\*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,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, 생명보험,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등

〈적용시기〉 '08.1.1. 압류분부터 적용





# 소득세제 분야



## II. 소득세제 분야

### 1.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(소득법 §55)

종 전		개 정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,000만원이하	8%	1,200만원이하	8%
1,000만원초과~4,000만원이하	17%	1,200만원초과~4,600만원이하	17%
4,000만원초과~8,000만원이하	26%	4,600만원초과~8,800만원이하	26%
8,000만원초과	35%	8,800만원초과	35%

\* 최저구간은 20%, 중간구간은 15%, 최고구간은 10%조정 (20%-15%-10%)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, 자영업자 등 중산·서민층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# ※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율

(단위: 만원, %)

과세 표준	산출세액 (개정전 a)	산출세액 (개정후 b)	경감액 (a-b)	경감율 (a-b)/a
1,500	165	147	△18	△10.9%
2,000	250	232	△18	△7.2%
3,000	420	402	△18	△4.3%
4,000	590	572	△18	△3.1%
5,000	850	778	△72	△8.5%
6,000	1,110	1,038	△72	△6.5%
7,000	1,370	1,298	△72	△5.3%
8,000	1,630	1,558	△72	△4.4%
9,000	1,980	1,836	△144	△7.3%
10,000	2,330	2,186	△144	△6.2%
30,000	9,330	9,186	△144	△1.5%

#### ※ 과세표준별 경감혜택 귀착

(단위: 억원)

총계	1~4천만원	4~8천만원	8천만원 초과
△11,300	△5,920	△2,938	△2,442
(100%)	(52%)	(26%)	(22%)

## 2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(소득영 별표 2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
<b>&lt;개 정&gt;</b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종합소득세 과표구간」 조정내용 반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</th> <th style="width: 35%; 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35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인이하가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만원 + 총급여의 2.5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10만원</u> + 총급여의 2.5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인이상가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0만원 + 총급여의 5.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50만원</u> + 총급여의 5.0% + <u>총급여중 4,000만원</u> <u>초과분의 5.0%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현 행	개 정	2인이하가구	100만원 + 총급여의 2.5%	<u>110만원</u> + 총급여의 2.5%	3인이상가구	240만원 + 총급여의 5.0%	<u>250만원</u> + 총급여의 5.0% + <u>총급여중 4,000만원</u> <u>초과분의 5.0%</u>
	현 행	개 정								
2인이하가구	100만원 + 총급여의 2.5%	<u>110만원</u> + 총급여의 2.5%								
3인이상가구	240만원 + 총급여의 5.0%	<u>250만원</u> + 총급여의 5.0% + <u>총급여중 4,000만원</u> <u>초과분의 5.0%</u>								

**<개정이유>**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

**<적용시기>** 공포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 3.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(소득법 §52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○ 공제한도 : 200만원 ○ 공제대상 교육비 -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	- 방과후학교 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 추가

#### 〈개정이유〉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

- 공교육비 부담이 없는 초·중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므로 교육비 공제가 거의 없음
  - \* 교육기본법 제8조 (의무교육)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 <개정 2005.3.24>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방과후 학교는 학교 교육기능보완, 사교육비 경감, 교육복지 실현, 학교의 지역사회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수업료(교재비는 미포함)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
- 학교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(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에 한함)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

#### 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# 4. 출산·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(소득법 §51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·입양공제 신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를 출산·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·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

#### <개정이유> 저출산대책의 일환

##### 출 산

-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,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

##### 입 양

-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국내입양가정에 대하여 세제상 배려

(단위: 명)

구 분	입양아동		
	계	국 내	국 외
1990	4,609	1,647	2,962
2000	4,046	1,686	2,360
2005	3,562	1,461	2,101
2006	3,231	1,332	1,899

#### 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5.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(조특법 §122의3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</p> <p>○ 대상 사업자 요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·ERP 도입사업자 등</li> <li>② 복식장부 기장·비치 및 신고</li> <li>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/3 이상 실제 사용</li> <li>④ 직전 3년 수입금액평균 대비 수입금액 1.1배 초과 신고</li> <li>⑤ 4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</li> <li>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</li> <li>⑦ 3년간 허위·가공 세금계산서·계산서 교부·수취사실 등이 없을 것</li> <li>⑧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이 일정비율 (예 : 10%) 미만일 것</li> </ol> <p>○ 다만,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% 이상인 경우</li> <li>-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% 이상인 경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'08~'09년중 시행(일몰기간 2년)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</p>

<개정이유>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6. 성실납세제도 도입 (법인령§120의2~10, 소득영§150의2~8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성실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·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실납세방식 신청기한 :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(법인), 2개월(개인)</li> <li>○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설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공무원·민간전문가로 구성</li> <li>-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취소여부와 관련한 자문기능 수행</li> </ul> </li> <li>○ 과세방법의 단순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가상각방법 : 정액법으로 단일화, 단일 내용연수(5년, 건물 20년)</li> <li>*원칙 : 자산종류별·업종별로 정액법·정율법 등의 방법 및 상이한 내용연수(5~20년) 적용</li> <li>-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: 임직원 총급여액의 20%</li> <li>*원칙 : 퇴직금추계액의 35% 한도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성실납세제도(㉠ &amp; 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: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, 업종별로 1.5~6억원이하인 개인</li> <li>㉡ ERP·POS 설치법인,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, 사업용계좌 설치 법인·사업자 등으로서 거래내역을 성실히 기장한 자</li> </ul>

<개정이유> 투명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2008.1.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

## 7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(조특법§126의2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금액 : 총급여액의 15% 초과분의 15%</li> <li>○ 일몰기한 : '07.11.30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금액 : 총급여액의 20% 초과분의 20%</li> <li>○ 일몰기한 연장 : '09.12.31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·선불·신용카드등</li> <li>-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·선불카드도 포함</li> <li>○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(기명식)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'99.9월 도입 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, 현재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'09.12.31까지 연장
- 최근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%에서 20%로 상향조정하되 (단위: 조원)

구 분	'01년	'02년	'03년	'04년	'05년	'06년
신용카드	135.4	174.0	170.5	167.1	190.5	214.8
직불·체크카드	0.1	0.1	0.1	3.3	8.0	13.4
현금영수증	-	-	-	-	18.6	30.7

-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%에서 20%로 상향조정하여
  - 최저사용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

<적용시기> '07.12.1.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 8.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

### 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(소득법 §34·52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○ 소득금액의 10%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한도 확대 ○ (08년)15%, (10년)20% *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% 유지

〈개정이유〉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# 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(소득법 §34·52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

〈개정이유〉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9.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(소득법§160의3)

종 전	개 정
<p><b>&lt;기부자측면&gt;</b></p> <p>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만원 이상 기부자</li> </ul> <p><b>&lt;공익법인측면&gt;</b></p> <p>영수증 발급내역 보관(5년)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0만원 이상 기부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부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기부금액,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수증 기재금액의 1%</li> </ul> </li> <li>○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보관액의 0.1%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제출대상 단계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'08) 100만원 ('09) 50만원 ('10) 금액제한 폐지</li> </ul> <p>영수증 보관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'09) 50만원 ('10) 금액제한 폐지</li> </ul> <p>가산세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수증 기재금액의 2%</li> <li>- 미보관액의 0.2%</li> </ul> <p>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세무관서 제출의무화</p> <p>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(관보, 국세청 홈페이지)</p>

**<개정이유>**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·제재 강화

**<적용시기>** '08.1.1.이후 지출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## 10.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(소득영 §110①, 부가영§29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</li> <li>○ 의약품 구입비 등     &lt;신 설&gt;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사·치과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</li> <li>○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    &lt;신 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*</li> </ul> <p>* 재가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    시설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 노인장기요양보험\* ('08.7.1) 시행 지원

※ 고령(65세 이상)이나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

-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\*」상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\*\*를 말함

\* '07. 4. 27 공포, '08. 7. 1 시행 예정(보건복지부)

⇒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·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

\*\* 서비스의 예시

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복지용구 대여, 노인요양 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

### <적용시기> 2008.7.1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11.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(소득영 §38 등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</p> <p>○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※ 퇴직연금 세제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세 비과세</li> <li>-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</li> <li>* 한도 : 연간 300만원</li> </ul>	<p>○ 「과학기술인 공제회법」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</li> <li>-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</li> <li>-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이상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과학기술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주역인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

- \* 과학기술인 공제회
  -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
  -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의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운영
  - 적립식 공제급여사업, 복지·후생 사업, 퇴직연금 사업 등을 수행

〈적용시기〉 2008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12.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(소득영§9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○ 돼지 : 200마리 이하 ○ 닭·오리 : 10,000마리 이하 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○ 돼지 : 500마리 이하 ○ 닭·오리 : 15,000마리 이하  ○ '양봉'(100군 이하)

<개정이유> 축산부업 농가 지원

<적용시기>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

# 법인세제 분야





### Ⅲ. 법인세제 분야

#### 1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(법§18의3①제4호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</p> <p>출자비율 <u>50(30)%이하</u> <u>50(30)%초과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%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0%</p> <p>* ( )는 자회사가 상장법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<b>계열회사*</b> 출자시 적용 배제</p> <p>* 계열회사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로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상호 간에는 서로 계열회사라 칭함</p> <p>* 기업집단 :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</p> <p><b>&lt;단서 신설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배당받은 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함</p>

#### <개정이유>

익금불산입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

#### <적용례>

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2.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(법§18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 <input type="radio"/> 지주회사(금융지주회사 포함) 출자비율 <u>80(40)%이하</u> <u>80(40)%초과</u> 80%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0% <input type="radio"/> 일반법인 출자비율 <u>50(30)%이하</u> <u>50(30)%초과</u> 30%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0% * ( )는 자회사가 상장법인	<input type="radio"/>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 추가

〈개정이유〉
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 확대

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3.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(법§36, 시행령§6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</p> <p>○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*</p> <p>* 압축기장총당금·일시상각총당금을 설정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(감가상각) 시점에 과세</p> <p>○ 사업용자산 취득시한</p> <p>-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국고보조금 대상 법률</p> <p>-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</p> <p>-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</p> <p>· 「지방재정법」 등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&lt;추 가&gt;</p>	<p>-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*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</p> <p>* 허가·인가 등의 지연</p> <p>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</p>

### 〈개정이유〉

- 공사부담금의 경우를 감안하여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
- 국고보조금의 근거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과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원화된 점을 감안

### 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

4.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 거부시 가산세 제도 보완(법§76  
①,§117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부금액의 5% 가산세 부과(§76①)</li> </ul> <p>□ 국세청장은 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정하여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(§117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됨(§117①)</li> <li>○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(§117①)</li> </ul> <p>*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(연간 200만원 한도)의 포상금 지급 (국세기본법 §84의2)</p>	<p>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신용카드가맹점</li> </ul> <p>⇒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</p> <p>□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음*</p> <p>*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예정</p>

### 〈개정이유〉

-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적어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
-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와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있음을 감안,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

### 〈적용례〉

- 공포일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5.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
(법§18의3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 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 불산입</p> <p>출자비율 <math>\frac{50(30)\%}{30\%}</math>이하 <math>\frac{50(30)\%}{50\%}</math>초과</p> <p>* ( )는 자회사가 상장법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○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</p>

**<개정이유>**

-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, 동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산입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

**<적용례>**

- 시행일이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6. 수시부과대상 과세기간 확대(법§69②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</li> <li>○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</li> <li>○ 기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시부과 대상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조세채권의 원활한 확보

### <적용례>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7.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(법§60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 신고기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
### <개정이유>

- 월중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으로 인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 해소

### <적용례>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## 8. 지급조서 용어 순화(법§120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조서  * 지급조서 용어 사용 사례 · 법인세법 제120조(지급조서 제출의무) · 법인세법 제120조의2(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)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“지급명세서”로 변경

### <개정이유>

- “조서”는 일본식 사법용어이므로 지급명세서로 순화

9.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관리강화(법 §112조의2, §76⑩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(법§112의2)  ○ 연간 100만원 초과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확대  ○ 보관의무 적용 기준금액 하향조정 - 연간 100만원 → 50만원(09) → 금액제한 폐지('10)
<input type="checkbox"/> 불성실가산세(법§76⑩)  ○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- 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의 1%  ○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미작성·보관 - 발급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.1%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강화  -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의 2%  - 발급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.2%

〈개정이유〉

-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성 제고

〈개정시기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10.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명확화(법§58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손실 세액공제</p> <p>○ 천재·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30%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의 비율만큼 법인세액에서 공제(법§58)</p> <p>-법인세 :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체납된 법인세(영§95④)</p>	<p>-법으로 이관</p>

〈개정이유〉

-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세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

## 11.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산세 조문 정리(법§76⑫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급 최저금액 : 5,000원</li> <li>○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 -발급거부금액 × 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급 최저금액 기준 폐지</li> <li>○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는 5,000원 이상 거래에 적용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폐지(영§159의2⑥)
  - 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산세는 5,000원 이상 거래에 적용

### <적용시기>

- '08.7.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(6월 유예)

12.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(조특§3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말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세제지원</p> <p>○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약서에 채무면제, 부동산 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</li> <li>-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</li> </ul> <p>○ 세제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무면제액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</li> <li>-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 : 50% 양도세 감면</li> <li>· 법인 :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</li> </ul> </li> <li>- 금융기관의 채무면제액 손금산입</li> </ul> <p>○ 사후관리 :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세 · 법인세 추정 및 이자가산</p>	<p>&lt;일몰 폐지&gt;</p>

13.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폐지(조특§41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말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제지원</p> <p>○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약서에 자산증여·부동산 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</li> <li>-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</li> </ul> <p>○ 세제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</li> <li>-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법인에게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% 감면</li> <li>- 결손법인에의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</li> </ul> <p>* 최대주주 :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보유주식수 가장 많은 개인주주</p> <p>○ 사후관리 : 채무 미상환 또는 3년내 사업폐지시 양도세·법인세 추징 및 이자가산</p>	<p>&lt;일몰 폐지&gt;</p>

#### 14.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축소(조특§5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2007년말 이전에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0%감면 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기한 : 2008.12.31

#### <개정이유>

-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감안, 감면 폭을 축소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

#### <적용례>

-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

15.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연장(조특§47의4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2007년말까지 합병 (분할합병 포함)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1년 이내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</p> <p>○ 처분이익을 3년거치 3년균등 익금산입</p> <p>* 2005.12.31 신설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</p>

〈개정이유〉

-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합병 이후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을 위해 존치

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

16.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(조특§52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7년 말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</p> <p>○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</p> <p>* 2000.12.31 신설 2005.12.31 일몰연장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</p>

〈개정이유〉

-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동 제도 유지 필요

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최초로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

17.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연장(조특§14②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 조합, 기업구조조정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</p> <p>○ 2007년말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, 벤처기업,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09년말까지 2년 일몰 연장</p>

〈개정이유〉

- 기관투자자의 창업자,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

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18.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원개발투자자산 과세이연(조특§104조의 14④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자산* 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(법인세법 제36조 준용)</p>

〈개정이유〉

-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한 점과, 해외자원개발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대상에 포함

19.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(조특§85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·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국법인 :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</li> <li>○ 거주자 : 처분시까지 과세이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·해산한 경우 일시 익금산입·양도소득세 납부 (이자상당액 가산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시한 : '09.12.31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시에 대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지원</p>

### 〈개정이유〉

-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('04.1)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

### 〈적용례〉

-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용분부터 적용

20.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“공장” 이전시 과세이연(조특 §85조의 7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※ 개인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현금보상 10%, 채권보상 15% 세액감면(조특법 §77)</li> <li>-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공장이전시 이전공장 양도시까지 과세이연(조특법 §85의2)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토지 수용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공장”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</li> <li>○ 지원대상 :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가동</li> <li>○ 지원한도 : ① × ② × ③</li> <li>① (공장양도가액) - (취득가액) - 이월결손금</li> <li>② 신규공장 취득가액 / 기존공장 양도가액</li> <li>③ <math>1 - \frac{(\text{신규공장 면적} - \text{기존공장 면적} \times 1.2)}{\text{기존공장 면적} \times 1.2}</math></li> <li>○ 이전방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</li> <li>- 기존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공장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일몰시한 : '09.12.31</p>

### 〈개정이유〉

- 현재 지방이전을 위한 자발적인 공장 이전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,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하여 강제수용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 지원

### 〈적용례〉

-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익수용분부터 적용



## 21.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(조특§104조의 15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(학교법인)*이 수익용자산**으로 보유중인 토지·건물을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***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</p> <p>* 학교법인 :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 (사립대학을 설립하는 주체)            ** 수익용자산 : 대학설립·운영규정에서 규정            *** 토지, 건물 등 유형자산</p> <p>○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</p> <p>○ 과세이연금액 : ① × ②</p> <p>① (양도가액) - (취득가액) - 이월결손금           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/ 기존자산 양도가액</p>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(학교법인)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(기부)하는 금액* 손금 산입</p> <p>* 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금액</p> <p>※ 일몰시한 : '10.12.31</p>

### <개정이유>

-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수익용재산의 재구성을 통해 고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

### <적용례>
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## 22.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(조특§7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%범위 내 손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진흥기금</li> <li>○ 사립학교 운영 병원, 국립 대학병원, 서울대학교병원, 대한적십자병원, 국립암센터, 지방의료원(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)</li> <li>○ 사내근로복지기금</li> <li>○ 독립기념관</li> <li>○ 특정연구기관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한국과학문화재단,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,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한국정보문화진흥원</li> <li>○ 사회복지공동모금회</li> <li>○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</li> <li>○ 한국교육방송공사</li> <li>○ 한국국제교류재단</li> </ul> <p>※ 일몰시한 : '09.12.31</p>	<p>□ 다음의 기부금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”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</li> <li>○ “박물관” “미술관”<sup>*</sup>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<sup>**</sup></li> </ul> <p>*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</p> <p>**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</p>

23. 조문정리 (조특§136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정부투자기관등의 접대비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의 70%로 제한</p> <p>○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</p> <p>○ 정부가 20%이상 출자한 법인</p> <p>○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 주주인 법인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※ 삭제 후에도 적용범위는 동일</p>

<개정이유> : 조문정리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」에 따라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, 「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」 폐지

24.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(조특령§ )

<법 개정사항§104의 15>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1년 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 (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)</li> <li>○ 1년 내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익금산입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시한 (1년) 적용시 종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포함</li> <li>○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 예정자산가액을 적용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대학설립·운용규정」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, 건축물</li> </ul> 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이연금액 (= ①×②)</p> <p>①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가액 - (장부가액 +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 결손금*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</p> <p>②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양도가액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100분의 100한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정세액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이연의 신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「양도차익명세 및 분할 익금산입조정명세서」를 제출</p>

### <개정이유>

- 조특법상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# <적용시기>

- 2008.1.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5. 농업회사법인의 임업, 축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령§65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6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업소득 : 전액 감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작물재배업(지방세법§197의 소득)</li> </ul> </li> <li>○ 농업외 소득 : 4년간 50% 감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외 소득의 범위 : 「농업·농촌기본법시행령§21」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*</li> </ul> </li> </ul> <p>- &lt;추 가&gt;</p> <p>*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§21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·공급</li> <li>2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 배양사업</li> <li>3. 농산물의 구매·비축사업</li> <li>4.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·수리·보관사업</li> <li>5.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·관리사업</li> </ol>	<p>- 축산업, 임업, 농작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</p>

〈개정이유〉

-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“농업소득”의 정의가 달라
  - 축산업, 임업, 농작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

〈적용시기〉 :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26. 정부출자기관 접대비지출한도 규제 범위 조정(조특령§130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출자기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일반법인의 70%로 제한 (법§136)</p> <p>○ 정부출자기관의 범위</p> <p>- 정부가 20% 이상 출자한 법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 신설&gt;</p>	<p>-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공기업,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인 중 상장법인 제외</p>

<개정이유>

- 정부출자법인 중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,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
-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가 적용되는 상장법인에 대해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접대비 한도 인정

<적용시기>

- 2008.1.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7.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(법령§42③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접대비 손금불산입</p> <p>○ 접대비 : 접대비·교제비·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(법 §25⑤)</p> <p>- 금융기관 등이 적금·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(일명 모집권유비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

〈개정이유〉

- 앞으로 모집권유비를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, 접대비,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

〈적용례〉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

28.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(법령§73, §76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(§73 3호)</p> <p>○ 평가방법 : 환산손익 인식 (§76①,②)</p> <p>-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“외국환거래법”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</p> <p>- 「평가할 원화금액 - 원화 가장액」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</p> <p>* 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</p> <p>- 기초 : 자산가액 \$100, 환율 1,000 장부가액 100,000원</p> <p>- 기말 : 자산가액 \$100, 환율 900원 : 장부가액 90,000원</p> <p>- 평가손 : 10,000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일반법인)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의 환산손익 부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은행업) 외화자산·부채의 환산손익 인정</p> <p>* 화폐성,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 (환산손익 인식 범위 확대)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통화관련 파생상품* 평가 (§73 4·5호)</p> <p>* 선물, 선도, 스왑, 옵션(규칙§37의2)</p> <p>○ 은행, 종금사, 증권사 :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</p> <p>○ 일반법인 :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</p> <p>○ 평가방법 :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와 동일 (§76①,②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일반법인) 통화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 부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은행업) 선도·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의 인식을 허용</p> <p>* 파생상품의 환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</p>

**<개정이유>**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,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

**<적용시기>** '08.1.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29.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(법령§48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경비 배분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자금액 비율</li> </ul> </li> <li>○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 광고선전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매출액 비율</li> <li>ii) 매출원가 비율</li> <li>iii) 인건비 비율</li> </ul> </li> <li>○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 광고선전비외 경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출액 비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경비* 배분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 : 약정에 따른 배분 인정</li> <li>- 특수관계의 법인간 :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</li> </ul> </li> </ul> <p>* 공동경비 : 공동광고선전비와 공동광고선전비외 공동경비 모두 포함</p>

〈개정이유〉

-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
- 인건비,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

〈개정이유〉

- 2008.1.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0.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(법령§78②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 평가가 원칙(법 §42①)</p> <p>○ 다음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 평가 인정(법 §42③3,4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산</li> <li>-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* 으로서 부도, 회생계획인가 결정,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</li> </ul> <p>* 상장·코스닥법인, 중소기업 창업투자주식회사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주식(영 §78②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☞ 비상장법인주식은 부도 등의 경우에도 감액손실 부인</p>	<p>*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추가</p> <p>☞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부도 등의 경우 감액손실 인정</p>

#### <개정이유>

-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임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,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지원

#### <적용례>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

31.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(법령§63①②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법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보증기금</li> <li>- 기술신용보증기금</li> <li>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</li> <li>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</li> <li>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</li> <li>- 엔지니어링공제조합</li> <li>- 소프트웨어공제조합</li> <li>-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손금산입한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보증잔액의 1%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산업연도 익금에 산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법인 추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공제조합</li> <li>- 전문건설공제조합</li> <li>-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</li> <li>- 전기공사공제조합</li> <li>- 자본재공제조합</li> </ul> </li> <li>○ 손금산입한도 조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보증잔액 × Min [1%, 구상채권발생률 (=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 발생액/직전연도 보증잔액)]</li> </ul> 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한도를 조정하고, 법률에 의해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추가

**<적용시기>** '08.1.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2.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요건 완화(법령§17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에 비해 크게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인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비율 이상* 지분 보유시 자회사로 보아 80%이상 익금 불산입 * 상장법인 : 30% 비상장법인 : 50%	* 상장법인 : 20% 비상장법인 : 40%

#### <개정이유>
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개정('07.4.1)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,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

#### <적용례>

- 2008.1.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해당받는 분부터 적용

33.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(법령§64⑦신설, 종전⑦→⑧, §65④삭제)

<법 개정내용(§36②)>

◇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시한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사부담금의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연장 사유(법§37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의 허가, 인가 지연</li> <li>○ 공사기간의 연장</li> <li>○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 등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시한을 연장 사유를 공사부담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</p> <p>* 시행령 §65④을 §64⑦으로 이관</p>

<개정이유>

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정리

<적용례>

2008.1.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

### 34.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(법령§11·§19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(구상손실)을 손익에 반영</p> <p>* 구상채권 :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(보험회계처리준칙 22)</p> <p>* 구상손익 : 당해연도말 구상채권과 전년도말 구상채권의 차액(금감원, 보험회계해설서)</p> <p>☞ 2007.2.28 시행령 개정시 신설</p>	<p>&lt;삭 제&gt;</p>

#### <개정이유>

- 구상손익은 과세손익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구상권 행사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 체계에 부합

<적용례>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35. 금융기관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(법령§111②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금융기관의 경우 “채권 등”의 “이자 등”에 한하여 원천징수(§111②)</p> <p>○ 금융기관의 범위(§111② 각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(영 §61②)</li> <li>-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 금고</li> <li>- 한국은행</li> <li>- 자산운용회사, 투자회사</li> <li>-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</li> </ul> <p>○ “채권 등”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 또는 지자체, 내국법인, 외국법인의 국내지점,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</li> <li>- 예금증서, 신탁·투자신탁의 수익증권(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 제외), 어음(상업어음 제외)</li> </ul> <p>○ “이자 등” : 이자와 할인액</p>	<p>□ 금융기관이 받는 “채권 등”의 “이자 등”에 대하여 원천징수 폐지</p>

**〈개정이유〉** 채권시장 활성화 유도

**〈적용례〉** 2008.6.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**〈경과규정〉**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 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방법\*에 의해 원천징수

36.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(법령§111③, §112②·⑤, §113⑩, §114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·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·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 예외 인정 (§111③)</p> <p>□ “투자회사”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관련 조문 정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 §73③에 따라 「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」상 투자회사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: 자산보관회사(영§112②)</li> <li>○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(§112⑤)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자산보관회사” 삭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법§73③ 투자회사 삭제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○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(§113⑩)</p> <p>□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수자(금융기관 포함)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(§114의2③)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□ 매수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원천징수 예외 (§114의2③)</p>

**<개정이유>**

-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

**<적용례>** 2008.7.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  
부터 적용

37.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(법령§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, 농업(조경수 식재 제외)</li> <li>○ 연구 개발업</li> <li>○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</li> <li>○ 유치원, 학교,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</li> <li>○ 사회복지사업</li> <li>○ 연금 공제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)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및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*에게 창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요건**을 갖춘 사업</li> </ul> <p>* 법인세법 시행규칙 §1의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, 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</li> <li>·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</li> </ul> <p>** 법인세법 시행규칙 §1의3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공동사업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2/3이상이 금융소위계층 해당하고, 구성원 상호간 연대납부의무가 있을 것</li> <li>2) 2,000만원 이하(공동창업비의 경우에는 5000만원)의 창업비, 의료비, 교육비, 생계비 대출일 것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3)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을 것</p> <p>4)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(9%) 이하</p> <p>5) 창업비 대출의 경우 경영 consulting 등 지속적으로 관리</p> <p>6) 대출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%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할 것</p>

### <개정이유>

-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의 운용상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

### <적용례>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38.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사업  
(법령§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, 농업(조경수 식재 제외)</li> <li>○ 연구 개발업</li> <li>○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</li> <li>○ 유치원, 학교,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</li> <li>○ 사회복지사업</li> <li>○ 연금 공제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)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영리법인(사립학교의 신축·증설,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)이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사립학교시설을 대여하는 사업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

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프라에 대한 지원

**<적용례>**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

39.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(법령§2①8라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, 농업</li> <li>○ 연구 개발업</li> <li>○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</li> <li>○ 유치원, 학교, 원격대학 경영 사업</li> <li>○ 사회복지사업</li> <li>○ 연금 공제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)</li> <li>○ 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</li> </ul>	<p>&lt;삭 제&gt;</p>

<개정이유>

-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근거규정인 「국세기본법」 (§13)이 개정\*('07.12)된 점을 반영

<적용례> 2008.1.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40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등(법령§36①1호사목, §36⑤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민법§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요건 충족시 재경부장관이 지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종교·지선·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</li> <li>○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자체 또는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</li> </ul>	<p>&lt;지정요건 추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</li> <li>○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</li> <li>○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</li> </ul>
<p>□ 다음의 경우 재경부장관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취소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정금액* 이상의 상속·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* 사업연도별 1,000만원(시행규칙 §18⑥)</li> <li>○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 통보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</li> </ul> <p>&lt;취소사유 추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세청장에 의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공시*된 경우 (국세기본법§85의5) * 예)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요건 이상, 기부금수령단체가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·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(예:3회)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</li> </ul>

### **<개정이유>**

-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

### **<적용례>**

- 2008.1.1 이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  
부터 적용

41.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보완(법령§86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%이상 배당시 소득공제(법 §51의2)</p> <p>○ 배당가능이익 :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(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) ± 이월이익잉여금 · 이월결손금 - 이익준비금</p> <p>* 적용대상 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동화전문회사</li> <li>· 투자회사, 사모투자전문회사</li> <li>·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</li> <li>·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</li> </ul>	<p>○ 배당가능이익 :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(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) ± 이월이익잉여금 · 이월결손금 (전기이월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) - 이익준비금</p>

〈개정이유〉

-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월이익잉여금 · 이월결손금에서도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

〈적용례〉

- 이 영 시행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42. 투자회사(PFV)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(법령§86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회사(PFV)가 배당가능 이익의 90%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</p> <p>○ 투자회사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 자본시설투자,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</li> <li>-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·상근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</li> </ul> <p>○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(실체형 회사)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에 포함</p>	<p>○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법인 요건 삭제</p>

### <개정이유>

- PFV와 주택건설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소득 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화

### <적용례>

- 이 영 시행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43. 새마을금고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적용 명확화(법령§57①, §5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에 대해 책임준비금·계약자배당준비금 인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액 -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 -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도 책임준비금·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-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한 보험약관 적용 -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

〈개정이유〉

- 새마을금고연합회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

〈적용례〉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44.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(법령§61⑤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(법 §34③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</li> <li>○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(영§61⑤) &lt;추 가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

-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

**<적용례>**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45.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“수신자금”의 명확화(법령§53④제1호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(법 §28①4호)</p> <p>○ 손금불산입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급이자 × (업무무관자산의 합계액/총 차입금)</li> <li>- 총 차입금에서 수신자금 등 제외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* 금융기관의 경우 총차입금에서 한은차입금, 외화차입금, 수신자금 등을 총차입금에서 제외</p>	<p>· 수신자금의 정의 : 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 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·관리·운용하는 자금</p>

<개정이유>

- 수신자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의 예수부채와 정의와 일치시킴

<적용례>

- 2008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

46.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조정(법령§159①)

<법 개정내용(§117①)>

<p>◇ 국세청장은 <u>업종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</u></p> <p>◇ <u>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 부과</u></p>
---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(§159①)</p> <p>○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관할세무서장,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</p> <p>- 소매업</p> <p>- 숙박업 및 음식점업</p> <p>-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*</p> <p>*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같음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법인</p> <p>○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</p>

<개정이유>

-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법인과 일치시킴

<적용례>

- 2008.1.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47.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규정 정비(법령§159조의2①~⑤삭제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</li> <li>-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,400만원 이상</li> <li>- 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 영위</li> <li>- 변호사 등 전문직</li> </ul> <p>○ 단,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</p> <p>* 시행규칙 : 국가, 지자체, 항공운송사업자</p>	<p>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&lt;삭 제&gt;</li> <li>* 수입금액 판정과 관련한 시행령 §159의2②~⑤ 삭제</li> <li>- &lt;삭 제&gt;</li> <li>- &lt;삭 제&gt;</li> <li>* 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, 변호사 등 전문직업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</li> </ul> <p>○ 국가, 지자체 및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</p>

<개정이유>

-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 중 수입금액 2,400만원이하(월 매출 200만원)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점을 감안

<적용례> 2008.1.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48. 현금영수증 최소발행금액 폐지(법령§159조의2⑥ 삭제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금액 <input type="radio"/> 5,000원(§157조의2⑥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가산세 대상 금액기준은 5,000원 유지(법§76⑫)</p>

<개정이유>

-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

<적용례>

- 2008.7.1이후 최초 발행분부터 적용

49.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(법령§120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(법 §7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법상 조직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회사(합명회사, 합자회사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인적회사</li> </ul> </li> <li>· 물적회사(유한회사, 주식회사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물적회사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</li> <li>○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 (영§120의2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법인이 관세법인(유한회사)으로 조직변경</li> </ul>

<개정이유>

-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

<적용례>

-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

50.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일괄납부 지정 (§7①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점·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</li> <li>○ 지점·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사무처리하는 경우 : 지점·영업소의 소재지</li> </ul> <p>- 예외 : 본점에서 일괄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</li> </ul>	<p>&lt;사유 추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는 경우</li> </ul>

<개정이유>

- 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」로 승인을 받은 법인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는 점을 감안

<적용례>

-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



동일기업과세특례  
(파트너십 과세제도)





#### IV. 파트너십 과세제도

##### < 개 요 >

##### 1.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의의

###### □ 파트너십(Partnership)

-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인적회사적 성격\*이 있는 단체

\* 대외적 :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, 대내적 : 동업자간 사적자치 보장

###### □ 파트너십 과세제도(Partnership Tax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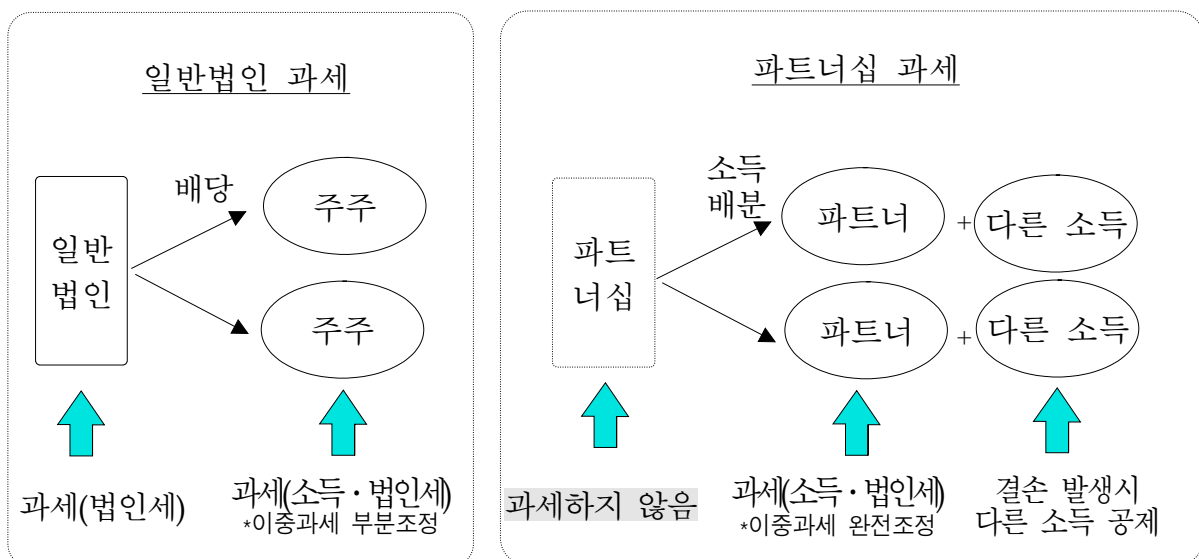
- 파트너십을 導管으로 보아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 이를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 (다만, 파트너십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實體로 인정)

- 파트너십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고,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

- 파트너십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하므로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 가능

- 적용대상 : 민·상법상 組合과 상법상 인적회사인 合名·合資會社 및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일부 有限會社 등

※ 일반법인 과세와 파트너십 과세의 비교



## 2.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

### □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

-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설립이 자유롭고 운영상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인적회사 형태를 선택하여 지식·기술·자본의 용이한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 선진국\*의 경우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통해

\* 선진국 도입사례 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 등

-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개개인이 각각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과세하는데
- 파트너십 자체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임

### □ 금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통하여

- 인적회사 성격\*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됨으로써

\* 대외적 :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, 대내적 : 동업자간 사적자치 보장

-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,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
- 또한,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형태가 합명·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도 그 실질이 조합과 같다면, 조합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

< 동업기업과세특례 도입방안 >

1. 용어의 정의 (조특법§100의14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용어의 정의  ① 동업기업( <b>Partnership</b> 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명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</li> </ul> ② 동업자( <b>Partner</b> 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·비거주자·내국법인 및 외국법인</li> </ul> ③ 배분( <b>Allocation</b> 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</li> </ul> ④ 동업자군(群)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를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가지 군(群)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 군(群)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</li> </ul>

	<p>⑤ 동업자군(群)별 손익배분비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를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가지 군(群)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 군(群)별로 해당 군(群)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</li> </ul> <p>⑥ 동업자군(群)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</li> </ul> <p>⑦ 지분가액(Outside Basi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</li> </ul> <p>⑧ 분배(Distribution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의 자산을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하는 것</li> </ul>
--	---

**<개정이유>**

- 동업기업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인 동업기업, 동업자, 배분,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,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,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, 지분가액, 분배에 대해 정의

## 2. 적용범위 (조특법§100의15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□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동업자에게 이를 적용</p> <p>○ 다만,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불허</p> <p>&lt;대상 단체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민법」에 따른 조합</li> <li>· 「상법」에 따른 익명조합</li> <li>· 「상법」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</li> <li>· 이와 유사한 단체 또는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</li> </ul> <p>※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(시행령 규정)</p> <p>(1) 특별법에 따른 조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변호사법」에 의한 법무조합</li> <li>·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</li> <li>·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한국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</li> <li>·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</li> <li>· 「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</li> </ul> <p>(2) 특별법에 따른 합명·합자회사</p> <p>&lt;합명회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법무법인</li> <li>·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특허법인</li> <li>· 「공인노무사법」에 따른 노무법인</li> <li>· 「법무사법」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</li> </ul>

	<p>&lt;합자회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</li> </ul> <p>(3)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중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한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</li> <li>·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</li> <li>·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법인</li> <li>· 「관세사법」에 따른 관세법인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</p>
--	---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
  - 조합이나 인적회사 성격을 갖는 법인을 대상
  - 다른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불허

### 3.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(법§100의16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의 납세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」 또는 「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」 납세의무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자의 납세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</li> </ul>

#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
  -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(비거주자: 국내원천소득)에 대한 소득세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,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
  - 동업자에 대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여

#### 4.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(법§100의17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신청 필요</li> <li>※ 적용신청방법(시행령 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 제출</li> <li>· 단,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후 1월 이내 제출</li> <li>* 경과규정 : 09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최초 과세연도 개시후 1월 이내 제출</li> <li>- 이 경우 동업자의 구성, 약정한 손익배분비율, 지분·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포기 가능</li> <li>※ 포기신청방법(시행령 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청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다만,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해서는 포기 불가</li> </ul>

#### <개정이유>

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인정



5.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(법§100의18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</li> <li>※ 손익배분비율 (시행령 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관에 규정된 약정 비율 (단 조세회피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계속적용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)</li> <li>*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불허</li> <li>-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</li> </ul> </li> <li>○ 다만,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(이하 “수동적동업자”)는 결손금 배분 불가</li> <li>※ 수동적동업자 (시행령 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업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업기업 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</li> <li>· 동업기업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</li> </ul>

-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이월배분 허용

※ 이월배분방법 (시행령 규정)

-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추가로 배분

□ 동업자의 소득구분

-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

-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취급

※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구분방법 (시행령 규정)

- 동업자군별로 각각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구분을 열거규정하는 방안 검토

- 다만,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

□ 세액공제·감면, 원천징수세액, 가산세 및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배분

-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다음 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금액</li> <li>·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</li> </ul> </li> <li>-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합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가산세*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법인세법상 가산세(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불포함) +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, 소득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</li> </ul> </li> <li>· <b>주택·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(내국법인·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)</b></li> </ul> </li> </ul>
--	--

### 〈개정이유〉

- 동업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
  - 동업기업 과세연도말에 동업기업의 소득을 실제 자산의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각 동업자에게 배분
- 동업자를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4개의 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계산
- 손익배분비율은 사적자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
  -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단일의 비율을 인정(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 인정)하되,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계속 적용의무 부여

6.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(법§100의19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</li> </ul> </li> <li>※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 자격 거래 (시행령 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손익이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※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업자는 「근로소득」으로 과세하고, 동업기업은 「인건비」 손금산입 (시행령 규정)</li> </ul> </li> <li>□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해 「법인세법」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</li> </ul> </li> </ul>

## 6-1.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(영§100의19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손익이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3자 자격 거래의 유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자산의 양도·양수 거래</li> <li>ii) 금전 기타 자산의 대부 및 차용 거래</li> <li>iii) 용역(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)의 제공 거래</li> <li>iv)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거래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자격의 거래로 인정

## 7. 지분가액의 조정 (법§100의20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시 동업기업 지분가액 증액조정</p> <p>※ 증액조정사유 및 금액 (시행령 규정)</p> <p>(ㄱ) 출자·매입 또는 상속·증여를 통해 추가 취득한 지분의 가액 (취득 당시의 시가)</p> <p>(ㄴ)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*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동업기업에 대한 비과세소득 중 해당 동업자의 손익 배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시 동업기업 지분가액 감액조정</p> <p>※ 감액조정사유 및 금액 (시행령 규정)</p> <p>(ㄱ)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가액(분배 당시의 시가)</p> <p>(ㄴ)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의 금액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지분가액의 최저액은 “0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분가액 조정순서 기타 지분가액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</p> <p>※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(시행령 규정)</p> <p>: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자산 출자에 따른 증액조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자산 분배에 따른 감액조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소득 배분에 따른 증액조정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④ 결손금 배분에 따른 감액조정</p>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하여 지분가액 (Outside Basis)에 대한 가감 조정 필요

## 8.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(법§100의21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자의 지분 양도시 주식* 양도차손익으로 처리</p> <p>* 소득세법 §94 ①3호(일반주식) 또는 §94①4호다목(특정주식)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</p> <p>** 양도차익 계산방법 : 지분가액(Outside Basis)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을 적용하여 계산</p> <p>○ 개인 동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</li> <li>- 주식 양도차손은 당해연도 다른 주식양도차익과 상계</li> </ul> <p>○ 법인 동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합병·합자회사 지분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보아 과세

## 9.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(법§100의2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「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- 지분가액」 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</p> <p>①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&gt; 지분가액 : 동업자에게 그 초과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</p> <p>②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&lt; 지분가액</p> <p>i) 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: 동업자가 그 미달금액을 주식 양도차손으로 취급</p> <p>◆ 청산 자산분배의 의의</p> <p>(ㄱ) 동업기업이 해산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(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지위 모두 소멸)</p> <p>(ㄴ) 자산을 분배받는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업기업의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 (동업자의 지위만 소멸)</p> <p>ii) 기타(비청산 자산분배)의 경우</p> <p>○ 동업자의 손실인식 불가</p> <p>* 지분가액 감액조정만 필요</p>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
- 동업자의 지위가 소멸되는 청산자산분배의 경우 손실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



10. 동업기업의 소득계산·배분명세 신고의무 (법§100의23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</p> <p>* 첨부서류 (시행령 규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</li> <li>· 지분가액조정명세서</li> <li>·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</li> </ul> <p>※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 및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취급 (시행령 규정)</p> <p>○ 각 과세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</p>

<개정이유>

-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 부여

11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 
(법§100의24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배분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기업이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내역 신고시* 거주자·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업자에게 분배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시</li> </ul> </li> <li>-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최고세율(법인 : 25%, 개인 : 35%)로 원천징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동업자의 과세연도에 해당 소득으로 신고·납부(과다 원천징수분은 환급)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- 당해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, 제한세율에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(소법§156① 및 법법§98①)로 원천징수</li> <li>·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조세조약의 비과세·면제,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(세무서는 6월내에 환급여부 결정)</li> </ul> </li> </ul>

	<p>※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거주자·내국법인과 동일한 소득구분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동 소득구분으로 인한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당해 소득을 동업기업을 통하지 않고 동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업기업이 수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 구분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--	--

**<개정이유>**

- 동업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경우
  - 소득 분배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없이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

## 12. 가산세 (법§100의2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신고시 :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4%</li> <li>○ 과소신고시 :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2%</li> </ul> <p>*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(시행령 규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 금액중 큰 금액 (한도 :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%)</li> </ul> <p>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×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</p> <p>* 대통령령의 정하는 이자율(시행령 규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일 0.03%</li> </ul> <p>②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5%</p>

### <개정이유>

-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신고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가산세 신설

### 13. 준용규정 (§100의26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(조합)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연도, 납세지, 사업자등록, 세액공제·세액감면, 원천징수, 가산세,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</li> <li>○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해당 규정 준용</li> </ul> <p>※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세연도·납세지·사업자등록</li> <li>· 세액공제·세액감면 규정</li> <li>· 동업기업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</li> <li>· 기장의무·원천징수의무·법정증빙수취의무·지급조서제출의무·계산서 제출의무·신용카드 발급의무·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의무 등 및 관련 가산세 규정</li> <li>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</li> </ul>

#### <개정이유>

-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(조합)의 경우에도 소득·세액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
- 과세연도, 납세지, 사업자등록, 세액공제·세액감면, 원천징수, 가산세,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해 동업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 준용



# 조세특례 분야





## V. 조세특례분야

### 1. 국가균형발전 지원

#### 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(조특법§60·61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조특법 §6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건 : 수도권과밀억제권 · 광역시 → 수도권과밀억제권外 · 광역시外 공장 이전</li> <li>○ 지원 내용 : 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조특법 §6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건 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→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본사 이전</li> <li>○ 지원 내용 : 본사 대지 · 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특례 확대 :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</li> <li>○ 과세특례 확대 : 본사 대지 · 건물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지방대학 R&D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(조특영§60의3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시 투자세액공제 (7%)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설비의 범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·시험용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

<개정이유> 지방대학 R&D설비 기부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(조특영§60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공장·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- 부동산업 *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매매업 - 소비성서비스업, 건설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이전 공공기관*은 업종 제한 없이 감면 혜택 부여 『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른 공공기관

<개정이유> “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(‘05.6.24)”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(총 178개 기관)에 대한 조세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,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

\* 토지공사, 주택공사, 한국감정원, 산업단지공단, 주택관리공단, 건설관리공단(6개 공공기관)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

## 2.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§10)

### ①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선택허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</p> <p>○ 증가분방식만 허용</p> <p>① 증가분방식 공제((ㄱ)+(ㄴ))</p> <p>(ㄱ)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: (당해연도 R&amp;D 지출액 - 직전 4년평균 R&amp;D 지출액)× 40%</p> <p>(ㄴ) 대학·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: (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&amp;D비용 - 직전 4년평균 중소 기업등에 R&amp;D 위탁비용)× 50%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</p> <p>○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선택허용[Max ①, ②]</p> <p>① 증가분 방식((ㄱ)+(ㄴ))</p> <p>(ㄱ) 현행과 같음</p> <p>(ㄴ) 현행과 같음</p> <p>②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R&amp;D지출액 × (3%+ α) * α :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&amp;D 지출 비율 × 0.5 (3% 한도) * 금년 매출액대비 R&amp;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허용</p>

〈개정이유〉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② 세액공제대상 위탁R&D비용 범위 확대(조특법§10, 조특영§9)

현행	개정안
<p>□ 대기업의 증가분방식(①+②)</p> <p>①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: (당해연도 R&amp;D 지출액 - 직전 4년평균 R&amp;D 지출액)× 40%</p> <p>② 대학·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: (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&amp;D비용 -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&amp;D 위탁비용)× 50%</p> <p>- 대상비용 : 기술개발용역 위탁, 공동기술개발 수행 비용</p> <p>- 대상기관 ·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·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</p>	<p>- 대상비용 추가 : 위탁교육비,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</p> <p>- 대상기관 보완 · (현행과 같음) · 연구개발서비스업(연구개발업+연구개발지원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</p>

〈개정이유〉 국내외 전문연구기관·대학에의 위탁교육을 통한 첨단 R&D 전문인력양성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.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(조특법§25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율 : 투자금액의 3%</li> <li>○ 일몰기한 : '09.12.31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율 상향조정 - 3% → 7%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 4.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(조특법§8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증자(대기업) -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</li> <li>○ 수증자(중소기업) -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

〈개정이유〉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5.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§85의6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* 인증후 4년간 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  *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<개정이유> 일자리창출·사회서비스 강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 ※ 사회적 기업

#### □ 개념

-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·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
- 즉, 일반 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만, 이윤 극대화나 배당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
- “영리적 기업 활동”과 “사회적 사명 수행” 동시 추구

#### < 기존 조직과의 차이 >

구 분	조 합	사회적기업	기 업
목 적	주로 경제적 목적	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	경제적 목적 (이윤창출·배당)
지 향	조합원 지향	수혜자 지향	투자자 지향
연대성의 범위	자조(self-help) 좁은 연대성	지역사회, 공익, 넓은 연대성	사회적 연대성 고려 미약
통 제	조합원의 자체 통제	다양한 이해관계자	투자자
동기부여	조합원의 이익 증진	사회적 사명, 연대성	이윤 극대화

#### □ 조직 형태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영리법인(회사),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가능

## 6. 고유가 대책

### ①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(조특영§2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투자세액공제(10%)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</li> <li>○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·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,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</li> </ul> <p>※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(부품 등)를 제조하는 시설</p>

<개정이유> 신·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개발·보급 촉진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104의14, 영 §104의13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(지분투자 포함)시 투자금액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3%를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외국법인은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(조광권)을 소유한 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인이 100%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3%를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투자금액은 외국자회사가 광업권(조광권)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해 주거나,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대여하는 금액</li> </ul>

<개정이유>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7.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

###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(조특영§116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일정규모이상인 외국인투자(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)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간 100% 그후 2년간 50%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(3천만불 이상)</li> <li>○ 물류업(1천만불 이상)</li> <li>○ SOC(1천만불 이상)</li> <li>○ R&amp;D(5백만불 이상)</li> <li>○ 관광업(2천만불 이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광호텔업</li> <li>- 수상관광호텔업</li> <li>- 종합휴양업</li> <li>- 종합유원시설업</li> <li>- 국제회의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R&amp;D 투자 요건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백만불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○ 관광업의 범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전통호텔업</li> <li>- 전문휴양업</li> </ul> </li> </ul>

\* 관광업종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확대('07.10.26.)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

**<개정이유>** :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

**<적용시기>** :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에 R&D 추가(조특영§116의2⑤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3년간 100% 그후 2년간 50%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(1천만불 이상)</li> <li>○ 관광업(1천만불 이상)</li> <li>○ 물류업(5백만불 이상)</li> <li>○ 의료기관(5백만불 이상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□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업의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전통호텔업, 전문휴양업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○ R&amp;D 업종 (1백만불 이상)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석사학위 · 3년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</li> <li>* 고도기술수반사업,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</li> </ul> </li> </ul>

\*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('07.8.17 )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

<개정이유> : 경제자유구역내 R&D 유치 활성화

<적용시기> :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(법인영,조특영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세조약 있는 경우 : 모회사 소유비율 20%이상시 전액 세액공제</li> <li>○ 조세조약 없는 경우 : 모회사 소유비율 20%이상시 50% 세액공제</li> </ul> <p>*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: 내국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의 세액공제도 허용</li> </ul>

\* 「해외 M&A활성화 추진방안」('07.10.18)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

〈**개정이유**〉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제거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

8.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§104의13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*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</p> <p>*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</p> <p>○ 공제대상</p> <p>-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%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</p> <p>○ 공제율</p> <p>① (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 -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)×3%</p> <p>- 다만,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</p> <p>②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% 세액공제</p> <p>○ 공제한도</p> <p>-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·법인세의 10%</p>

<개정이유> 자가·2차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 9.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(조특법§33, §33의2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 ○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%세액 감면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○ 3년거치 3년분할 익금(법인) ○ 양도소득세 50%감면(거주자)

\* 무역조정기업 :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(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·생산량이 25%이상 감소한 기업)

\* 근거법률 : 「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(’07.4제정)

### <개정이유>

-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

<적용시기> ’08.1.1.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 10.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(조특법§25의3 ,영22의4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대상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(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)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제율 : 투자금액의 7%</li> <li>○ 일몰기한 : 2010.12.31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세액공제(7%)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시설(공조설비, 수처리설비)</li> <li>○ 의약품 제조설비</li> <li>○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</li> <li>○ GMP규정*에 따른 건축물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*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·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련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</p>

### <개정이유>

- 한·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
    - 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
- \*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기준  
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·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·설비(Hardware)와 원료·자재 등의 구입, 제조·포장·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(Software)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 (약사법시행규칙 별표4)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 11.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(조특법§63의4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*에 대해서도</p> <p>○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</p> <p>*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 :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,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§8)</p>

### <개정이유>

-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

### 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※ 맞춤형 교육비용
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§8)에 따라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,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임
- 현재 채용조건형 3개 대학 8개 과정, 재교육형 35개 대학 122개 과정이 운영중임

## 12.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§63의4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포함하여 R&D설비 투자 세액공제* 허용 <small>* 투자금액의 7% 세액공제</small>

### <개정이유>

- 수도권 대학에 집중\*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·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

\* '05년의 경우 현물기부(2,700억원) 중 80%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## 13. 기타

### ①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(조특법 §121의13 등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당 40만원, 연간 4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간 이용횟수제한 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당 40만원, 연 6회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류구매 한도 제한 <input type="checkbox"/> 12만원 한도내에서 1병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류구매 한도제한 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40만원한도내에서 1병

<개정이유>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



②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(조특영§100조의7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 <input type="checkbox"/> (원칙)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<input type="checkbox"/> (예외) 급여수령통장사본. 다만, 고용주가 휴·폐업한 경우만 인정	<input type="checkbox"/> (현행과 같음)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주가 휴·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

〈개정이유〉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절차 간소화

〈적용시기〉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(조특영 §10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수족 등 20개 품목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대상품목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

〈개정이유〉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, 교육 및 고용기회 부여 지원

〈적용시기〉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

상속증여세 · 재산세제 분야



## VI. 상속증여세/재산세제 분야

### 1.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

#### ①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(상증영 §15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업상속공제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종 : 다음 업종 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흥주점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피상속인 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%이상 &lt;신 설&gt;</li> </ul> </li> <li>○ 상속인 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</li> <li>-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</li> <li>-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 &lt;신 설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*으로 하되, 음식점업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 등 30개 업종</li> </ul> </li> <li>○ 피상속인 요건 보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장 중소기업 : 40% 이상</li> <li>· 비상장 중소기업 : 50% 이상</li> </ul> </li> <li>-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중 80%이상 대표이사일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상속인 요건 보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상속세 신고기한(6월)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
<p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(3월)내 경영에 참여하고,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

〈적용시기〉 2008.1.1이후 상속·증여분부터 적용

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(상증법 §18②)

종 전	개 정
<p>□ 가업상속공제</p> <p>○ 한도 : 1억원</p> <p>○ 사후관리(5년) : 상속세 추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</li> <li>-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○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</p> <p>: Max [2억원 or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%(30억원한도)]</p> <p>○ 사후관리 강화(10년) : 전액추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5년간 가업용자산 90%이상 유지 그 다음 5년간은 80%이상 유지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상응하여 사후관리 강화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

③ 가업승계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(상증영 §15)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(5년간 90%, 그 후 5년간 80%이상) 위반여부 판정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업에 사용되는 토지·건물·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</li> <li>○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병·분할·법인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의 출자·승계</li> <li>- 수용·시설개체, 사업장 이전등에 따라 처분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</li> <li>-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□ 상속인의 가업종사 의무 위반여부 판정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, 주된 업종의 변경 및 가업을 휴업(1년이상)·폐업하는 경우</li> <li>○ 다만, 상속인의 사망, 질병의 요양등의 경우 예외인정</li> </ul> </li> <li>□ 상속인 지분 유지의무 위반여부 판정 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(출자지분)을 기준으로 판정</li> <li>○ 지분유지 의무 위반 사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만, 합병·분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예외인정</li> </ul> </li> <li>-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등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만,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제3자배정 등의 경우는 예외인정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가업승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

<적용시기> 2008.1.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

#### ④ 연부연납제도 개선 (상증법 §71②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세·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○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부연납 기간(최대)  ○ 일반적인 경우 : 3년 * 납부기한내 1/4납부 후 매년 1/4씩 3년간 분할납부  ○ 가업상속의 경우 -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% 이상 : 15년 - 기타의 경우 : 5년  ⇒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 ○ 1천만원 → 2천만원 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 ○ 5년으로 연장  ○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-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-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  ⇒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- 다만,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

〈**개정이유**〉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08.1.1.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



⑤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(조특법 §30의5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상속 특례제도 (’07.12.31 일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: 30세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</li> <li>○ 부동산,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</li> <li>○ 특 례 : 5억원 공제후 10% 세율로 증여세 부과후 상속시 정산</li> <li>○ 한 도 : 30억원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10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 (’10.12.31까지 3년 연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녀 : 18세이상</li> <li>- 부모 : 60세이상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*              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가업상속요건(단, 사업영위기간은 10년이상)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</p> </li> <li>○ (좌동)</li> <li>○ (좌동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(10년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을 유지, 가업유지요건 충족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창업자 생존시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

〈적용시기〉 ’08.1.1.이후 증여분부터 적용

## 2.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

### 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(상증법§51의2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 <p>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</p> <p>*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(제41조의4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: 모든 공익법인 (종교법인 제외)</li> <li>○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·지출의 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부·출연금,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</li> <li>- 인건비, 임차료, 고유목적사업비(100만원 초과분)</li> <li>-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·지출</li> </ul> </li> <li>○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사용금액의 0.5%</li> </ul> </li> <li>○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도 명세서 작성·보관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거래분부터 적용

(기존 공익법인은 2008.6.30.까지 신고, 가산세부과는 2009.1.1.이후 거래분부터 적용)

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(상증법§50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: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중 다음법인 제외</li> <li>-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는 공익법인(예 : 종교법인)</li> <li>-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</li> </ul> <p>○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*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</p> <p>*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세무사</p> <p>○ 세무확인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</li> <li>- 장부의 작성·비치여무의 준수 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확인제도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무확인 대상 확대 : 자산총액 10억원 이상</li> </ul> <p>○ 세무확인 주기 단축 : 매 2년 → 매 1년</p> <p>○ 외부전문가 축소 (3인→2인)</p> <p>*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감사 제도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: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(종교·학교법인 제외)</li> <li>○ 주기 : 매년</li> <li>○ 미이행시 : 가산세 없음</li> </ul> <p>* 개정된 주식출연·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</p>

<개정이유>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(상증법§51의3)

종 전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* 학교법인(사립학교법시행령 §14⑤)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이상 공개</p> <p>* 사회복지법인 (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§19)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</p> <p>○ 공시대상 - 자산총액 <b>10억원</b> 이상 공익법인 (종교법인 제외)</p> <p>○ 공시범위 -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-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* 표준양식 제정</p> <p>○ 공시방법 및 절차 -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공시</p> <p>○ 사후관리 -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<b>가산세*</b> 부과 * 가산세 : 자산총액의 0.5%</p>

<개정이유>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④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(상증법§16,§48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·취득 등 제한</p> <p>○ 동일기업 주식</p> <p>- 발행주식총수의 5% 이내</p> <p>○ 계열기업 주식</p> <p>- 총자산가액의 30%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명성*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·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</p> <p>*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</p> <p>- 전용계좌 개설</p> <p>-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</p> <p>- 외부감사 제도 도입</p> <p>- 매년 운용소득의 90%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</p> <p>- 발행주식총수의 10% 이내</p> <p>- 총자산가액의 50%</p>

〈개정이유〉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확대 유도

\* 일본 : 발행주식 총수의 50%, 미국 : 발행주식 총수의 20%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주식 출연·취득 분부터 적용

⑤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(상증영§43의2)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<p>□ 투명성 제고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교단체</li> </ul> </li> <li>○ 결산서 등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교단체</li> <li>-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산규모 10억원미만 공익법인 : 23,961개(87.1%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교단체, 학교법인</li> <li>-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산규모 100억원미만 공익법인 : 26,303개, 95.6%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납세편의 등 고려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⑥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(상증영 §80⑩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등 취임제한(의료법인 제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/5(최소 1명은 인정)을 초과하지 못함</li> <li>○ 임직원으로도 고용되지 못함.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의 교사</li> <li>- 의사</li> <li>-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</li> <li>- 고아원·탁아소의 보모</li> <li>- 도서관 사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위반시 1/5 초과 이사 및 임 직원의 급여·비서실 운영경비· 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예외인정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사 → 교원 * 교장·교감·총장·학장 포함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</li> <li>-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</li> <li>- 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사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공익법인 운영 필수인력에 대한 규제완화

〈적용시기〉 공포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.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(조특법§99의4)

종 전	개 정
<p>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*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</p> <p>○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</p> <p>○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이하</p> <p>*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</p> <p>· 소재지: 광역시·수도권·투기지역외 지역</p> <p>· 면적: 주택 45평(아파트 35평)이하 대지 200평이하</p>	<p>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</p> <p>○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(7천만원→1.5억원)</p> <p>○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(1억원이하) 폐지</p>

〈개정이유〉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

\*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'08.1.1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

4.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(조특법§85의7, §85의8 신설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사업용 수용(협의매수 포함)에 대한 과세특례</p> <p>○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</p> <p>※ 행복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 - 거주자: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- 내국법인: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</p> <p>○ 양도소득세 10%(채권보상분 15%) 감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○ 혁신도시의 경우 - 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</p> <p>○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- (법인)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- (개인) 3년거치 3년분할 납부</p> <p>* 일몰기한 설정 : '09.12.31</p>

<개정이유>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이전·양도분부터 적용

5.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: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(조특법§77)

종 전	개 정
<p>□ '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금보상분 : 10% 감면</li> <li>○ 채권보상분 : 15% 감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</li> <li>- 만기보유 특약체결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%로 상향조정</li> <li>- 다만,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</li> </ul> <p>※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(발행자 예탁제도) 마련</p>

<개정이유>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

※ 「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('07.7.6, 발표)」의 일환

<적용시기> '07.7.6.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

## 6.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

현 행	개 정 안
<p>□ '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금보상분 : 10% 감면</li> <li>○ 채권보상분 : 15% 감면</li> </ul> <p>* 만기보유시 20%감면(개정안에 포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토보상분 : 과세이연</li> </ul> <p>&lt;지원 요건&gt;</p> <p>(피보상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 등</li> </ul> <p>* 대토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가며, 시행령에서 추가요건 규정 검토</p> <p>(사업시행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</li> </ul> <p>* 국세청은 전산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토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시 등기원인을 "대토보상"으로 기재</li> </ul> <p>&lt;지원 내용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</li> </ul> <p>* 과세이연금액 : 양도차익중 대토보상비율 상당액  <math>\text{액}[\text{양도차익} \times (\text{대토보상} / \text{총보상액})]</math>          →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차감</p> <p>&lt;일몰시한&gt; 2009.12.31</p>

<개정이유>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토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지원

<적용시기>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 시행 이후 보상분부터 적용

## 7.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(법인법 §119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○ 대상 :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○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* 미제출·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%(1월이내 제출시 1%)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·코스닥 법인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 ○ 대상 : 지배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  * 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(증권예탁결제원 등)의 주식명의개서자료 제출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·활용

### 〈개정이유〉

-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제출분 부터 적용

8.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(법인영 §92의2②·종부영 §3①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법인세 추가과세* 및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</p> <p>* 내국법인이 주택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%를 추가과세</p> <p>○ 매입임대주택</p> <p>- 면적 : 국민주택(85㎡) 이하</p> <p>*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</p> <p>- 호수·임대기간 :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</p> <p>○ 건설임대주택</p> <p>- 면적 : 149㎡ 이하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</p> <p>*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</p> <p>- 호수·임대기간 :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</p>	<p>□ 리츠·펀드가 '08.1.1~'08.12.31 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(수도권 제외)은 면적·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</p> <p>○ 매입임대주택</p> <p>- 면적 : 85㎡ → 149㎡</p> <p>* 종부세 가격요건 : 3억원 → 6억원 이하</p> <p>- (현행유지)</p> <p>○ 건설임대주택 : 현행유지</p>

〈개정이유〉 민간펀드를 활용한 지방 중형 미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지원

\*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

〈적용시기〉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(양도세)

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(종부세)

9.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(소득법§95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보유특별공제 ○ 3년 ~ 5년 : 양도차익의 10% ○ 5년 ~ 10년 : 15% ○ 10년 이상 : 30% ○ 15년이상 1세대1주택 : 45%* *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,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%까지만 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%씩 공제 ○ 3년 : 10% ○ 4년 : 12% ∴ ∴ ○ 9년 : 27% ○ 10년 : 30% ○ 11년 : 33% ∴ ∴ ○ 14년 : 42% ○ 15년이상 : 45%

〈개정이유〉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10.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(소득법 §118의5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○ 보유기간 2년이상 : 9~36% ○ 1~2년 : 40% ○ 1년미만 : 50%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~36%로 단일화

〈개정이유〉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## 11.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년~5년 : 양도차익의 10%</li> <li>○ 5년~10년 : 15%</li> <li>○ 10년이상 : 30%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### <개정이유>

#### 해외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

-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보유에 대한 페널티 및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을 모두 폐지

\* 해외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장기보유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점도 감안

### <적용시기> '08.1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## 12.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(상증법 §53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 한도 ○ 3억원 ※ 상속공제: Max[5억원,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(30억원 한도)]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한도 상향조정 ○ 6억원 * 현행 고가주택 기준 ※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

### 〈개정이유〉

- 선진국의 사례,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,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

\* 미국,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, 프랑스의 경우 '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·증여세 면제방안 포함

### 〈적용시기〉 '08.1.1.이후 증여분부터 적용

## 13. 상속·증여세 물납제도 개선(상증법 §73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·증여세 물납 ○ 상속·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/2을 초과 ○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물납 대상재산 ○ 부동산 및 유가증권*에 한함 * 국·공채, 주권, 채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물납제도 개선 ○ 상속·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* 다만,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

### 〈개정이유〉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 개선

### 〈적용시기〉 2008.1.1.이후 상속·증여분부터 적용



## 14. 기타

- ①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  
(조특영 §66·67, 소득영 §168의8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 대상인지 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</p> <p>○ 농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또는 연접한 시·군·구에 거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※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세등 감면·중과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8년이상 재촌·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% 감면</li> <li>· 3년이상 재촌·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시 양도세 100% 감면</li> <li>· 양도세 중과(60%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)·법인세 추가과세(30%)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촌·자경 여부를 기준</li> </ul>	<p>○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*에 거주시 재촌으로 인정</p> <p>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허가기준과 동일</p>

<개정이유> 행정구역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 보완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② 도시지역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(소득영§168의10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</p> <p>○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</p> <p>-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</p> <p>- 도시지역 편입후 2년 경과</p> <p>○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</p>	<p>-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·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</p> <p>* 현재 농지의 경우 녹지지역·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예외 인정</p>

〈개정이유〉 녹지지역·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고, 농지와의 형평성을 감안

〈적용시기〉 2008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# 부가가치세 분야



## VII. 부가가치세 분야

### 1. 소매업, 음식·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(영§74의3④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별 부가가치율 · 제조, 전기·가스, 소매업: 20% (소매업은 '07년 12월까지 15%) · 농·어업, 건설, 부동산임대: 30% · 음식, 숙박, 운수, 통신업: 40%(음식·숙박업은 '07년 12월까지 30%) * 부가가치율: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매업, 음식·숙박업에 대한 부가율 일몰연장 · 소매업: 15%('09년 12월까지) · (현행과 동일) · 음식·숙박업: 30%('09년 12월까지)

#### <개정이유>

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(2년)으로 인하여 적용해오던 부가가치율\*의 일몰연장

\* 소매업(20% → 15%), 음식점업 및 숙박업(40% → 30%)

-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음식·숙박업 및 소매업이 지원

#### <적용시기>

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2.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(영§1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·소비하는 경우  <input type="checkbox"/> “재화의 공급”으로 보아(간주 공급) 부가세 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다만,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제외함

\*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(07.6.22)

### 〈개정이유〉

- 과·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·소비하는 경우
- 개인적 공급, 사업상 증여, 폐업시 잔존재화 등과 같이 부가세법 제 17조제2항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재화에 대해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

### 〈적용시기〉

- 시행일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.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(영§7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 신청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 신청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5일(근무일 기준)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요구기간 불산입 명확화

\*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(07.6.22)

#### <개정이유>

- 신속한 법인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5일(근무일 기준)로 조정하되, 보정요구기간은 불산입

#### <적용시기>

- '08.4.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4.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(영§17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물납 범위</p> <p>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○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</p>

#### <개정이유>

- 부가가치세법 제4조(재화의 공급)에서 법률에 의해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
  -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지방세법의 물납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제거

#### <적용시기>

- 시행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5.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재화의 범위확대(영§14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제경매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외되는 재화공급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
\* 국세심판원 개정건의사항

### <개정이유>

- 200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
  - 경매 재화 공급자는 폐업,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,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세수일실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제외
-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법원이 주관하고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

### <적용시기>

- 시행일 이후 경매를 통하여 공급하거나 받는 분부터 적용

## 6. 대한송유관공사의 총괄사업장 지정(영§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총괄사업장 지정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</li> <li>○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</li> <li>○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의한 한국철도공사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송유관안전관리법」에 의한 대한송유관공사</li> </ul>

### <개정이유>

- 대한송유관공사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총괄사업장에서 일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업무총괄장소를 총괄사업장으로 지정

### <적용시기>

- '08.7.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7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영 §29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보건용역(부가세 면제) ○ 의사·간호사·약사·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○ 장의용역, 화장 관련용역,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용역 등 <u>&lt;신 설&gt;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보건용역 추가 (현행 유지) (현행 유지)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

〈개정이유〉

노인장기요양보험\* ('08.7.1) 시행 지원

※ 고령(65세 이상)이나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

-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\*」상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\*\*를 말함

\* '07. 4. 27 공포, '08. 7. 1 시행 예정(보건복지부)

⇒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·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

\*\* 서비스의 예시

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복지용구 대여,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

〈적용시기〉

'08.7.1이후 노인장기요양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8.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영 §37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※ 재단은 시설사용의 대가(임대료 명목)로 학교로부터 총수업료의 20%를 수수하고, 이를 전액 시설투자 등에 사용

<개정이유>

-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감안
    - 양질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
    - 비영리교육재단법인\*이 운영하는 학교와 사립학교법상 일반학교와의 과세불형평 해소
- \* “각종학교에 관한 규칙”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만 설립가능하므로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은 “민법 제32조” 및 “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”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

<적용시기>

-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9.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(영§2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-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· 컨테이너수리업, 해운대리점업 <신 설>	· 해운중개업

\*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나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의 용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업

### <개정이유>

- 해운중개업체 경쟁력 및 수출상품 운임경쟁력 강화 지원
  - 해운중개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고,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개수수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

### <적용시기>

-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10. 외국·북한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(영§24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(외국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해 영세율 적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(외국 또는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해 영세율 적용</p>

**<개정이유>**

- 한국국제협력단의 원활한 해외 무상원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사업자가 동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 중('99.12.31 개정)
-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인에 대해서도
  - 해외원조의 취지, 부가세 과세기 원조효과 감소,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

**<적용시기>**

-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11. 공업용 소금의 과세전환(영 §2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<input type="radio"/> 소금	<input type="radio"/> 공업용 소금의 과세전환

### <개정이유>

- 천일염의 사용실태(공업용, 식용)와 법규정(공업용)간의 괴리\*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령\*\*의 정비가 완료되어 대한 식용·공업용 분류가 명확해짐
- 식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업용에 대해서는 과세
- \* 천일염은 「식품위생법」상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젓갈, 김치 절임용 등 식용용도로 사용되는 현실과의 괴리 발생
- \*\* <산자부> : 염관리법(07.12월 정기국회 통과)  
 <식품의약품안전청> :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「천일염의 기준·규격」 개정안을 고시

### <적용시기>

- 2008.7.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12.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(법§17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세액 불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비용을 추가

### <개정이유>

-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매입세액 불공제 입장을 명확화

### <적용시기>

- '08.1.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

### 13.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(법 §2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규정 ○ 가공·위장세금계산서 발행: 2% <u>&lt;신 설&gt;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강화 ○ 가공·위장세금계산서 수취: 2%

#### <개정이유>

-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
- 가공·위장세금계산서의 발행자(공급자)와 동일하게, 수취자(수요자)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

#### <적용시기>

- '08.1.1이후 가공·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

#### 14.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(법 §2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(법§22) ①허위등록 가산세(1%) ②세금계산서 등 불성실(1%) ③미교부, 가공·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(2%) ④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(1%) ⑤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(1%) ⇒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 정비           ⇒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

#### <개정이유>

-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조항의 정비 필요
  -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개정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 중복적용 배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

#### <적용시기>

- '08.1.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15. 신용카드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(법§32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○ 공제율 : 1% - 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: 1.5%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○ 공제율 인상 - 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 : 1.5% → 2%

### <개정이유>

- 음식·숙박업자(간이과세자)의 신용카드 발행비율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(간이과세자)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-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로 증가한 음식·숙박업자(간이과세자)의 세부담 완화

### <적용시기>

- '08.1.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16. 과세유홍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(영§7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○ 사업허가증 사본·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○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서류 추가 ○ 과세유홍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

### <개정이유>

- 명의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
  - 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위장사업자를 구별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명의위장을 통한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동 제도를 도입

### <적용시기>

- '08.7.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## 17.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(부칙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사업 : 과세*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환되기 이전('07.5.15)의 비축물자 매입세액에 대해  <input type="checkbox"/> 2008년 제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

\* 재부가-335(2007.5.2)

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동 비축사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도·소매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

### <개정이유>

- 원자재 가격의 안정 도모 등 조달청 비축사업의 공익성을 감안
  - 과세전환이전(2007.5.15)에 매입한 비축물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, 매입세액 상당액만큼 비축물자의 원가상승요인을 방지

### <적용시기>

- '07.5.15 현재 조달사업관련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적용

18.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명확화(영§85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·면세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○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용역의 총공급가액 × 면세공급가액 / 총공급가액</p>	<p>○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</p> <p>- i) 매입가액 비율, ii) 예정공급가액 비율, iii)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* 다만, 건물 신축 또는 구입할 경우 iii)을 i) 및 ii) 보다 우선 적용</p> <p>⇒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(매입세액의 안분계산) 준용</p> <p>○ 추후,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면적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산</p> <p>⇒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2(공통매입세액의 정산) 준용</p>

### 〈개정이유〉

- 기존법령해석에 의해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과세표준 계산방식 명확화

### 〈적용시기〉

-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19. 대리납부에 대한 조문정리(영 §8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납부 장소 <input type="radio"/> 사업장 관할세무서	<input type="radio"/>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

### 〈개정이유〉

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대리납부의무자가 면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소비자 개인인 점을 고려하여
- 부가가치세법 제34조와 동일하게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처를 “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”으로 명시
- \* 부가세법 §34(대리납부)  
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

### 〈적용시기〉

-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

20. 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명확화(영§64⑨,§65④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 규정 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세법 영세율 첨부서류 : 부가세법 시행령 §64, 65 <input type="checkbox"/>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: 조특법 기본통칙 106-106-1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규정 명확화  <input type="checkbox"/>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: 부가세법 시행령 §64, 65

〈개정이유〉

- 법 적용의 형평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 방지를 위해
  - 조특법 기본통칙 106-106-1 규정\*을 의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부과 규정을 법령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화

\* 영세율과표에 대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

〈적용시기〉

-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21.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위임규정 명확화(영§41 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위임규정 근거 명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<u>재경부령이 정하는</u>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

### <개정이유>

- 법 적용의 형평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 방지
  -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함을 명확화

### <적용시기>

-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22.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(농림특례 별표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농·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용 필름 등 32개 품목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환급 품목 추가  <input type="checkbox"/>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

<개정이유> FTA 추진 등을 감안, 축산업계 등을 지원

<적용시기>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

### 23.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

####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(조특법 §106의3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지금 면제대상 ○ 수입업자·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기한 : '07.12	○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기한 : '10.12

<개정이유>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(조특법 §106의4 신설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「금거래계좌」를 통해 국고에 납부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·법인세 경감 ○ 직전대비 증가분의 50%, 당기이용분의 5% 세액공제중 선택

<개정이유>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

<적용시기>

① 매입자납부제도 : '08.7.1.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소득세·법인세 경감 : '09.1.1.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(조특법 §106의5 신설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/103 세액공제 허용 ○ 고금 : 14K이상 금 제품 ○ 한도 : 고금 매출액의 80% 한도 ○ 일몰기한 : '09.12월 (2년)

<개정이유> 고금거래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7.1.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(조특법 §106의6 신설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월 1회)

<개정이유> 금지금 거래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7.1.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24.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

### ①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(조특법 §106의2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 * 시행령 사항을 법률에 규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용대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만ℓ 이상 : 면세유 전용 구매카드</li> <li>- 1만ℓ 미만 : 종이구입권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용지역 : 전국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본세 이외에 가산세 (감면세액의 10%) 추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중단 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단사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</li> <li>*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, 농어업 이외의 가사용 등으로 사용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신 설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급중단기간 : 1년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·어업기계 보유현황등과 영농·영어 등 경영사실 신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업 기계의 취득·양도, 농어민등의 사망·이농시 30일내 변동사항 신고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유구입카드로 전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발급</li> <li>○ 주소지 시·군 또는 경작지 시·군 등으로 제한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를 40%로 인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중단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단사유 추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 </li> </ul> <p>-농기계의 보유 및 변동현황 등을 허위 또는 미신고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급중단기간 연장(2년)</li> </ul>

<개정이유>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
(면세유구입카드 관련사항은 '08.7.1일 공급분부터 적용)

② 농·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(조특법 §106의2)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·수협에 대한 제재</p> <p>○ 해당 단위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의 10% 가산세 부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수준 합리화</p> <p>○ 고의성있는 경우 : 감면세액의 40%</p> <p>○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 : 감면세액의 20%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·수협 홈페이지에 공개</p>

<개정이유> 농·수협의 면세유 관리업무 강화 유도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

③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(조특법 §106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업자*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%를 가산세로 추징</p> <p>* 주유소, 석유대리점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율을 40%로 인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판매 불허</p> <p>○ 주유소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 승계</p>

<개정이유> 석유류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

25.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(조특영 §105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</p> <p>○ 의수족 등 20개 품목     &lt;신 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대상품목 추가</p> <p>○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</p>

<개정이유>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, 교육 및 고용기회 부여 지원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

특별소비세 · 교통세제 분야



## Ⅷ. 특별소비세/교통세제 분야

### 1.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(특소세법 §1②4, 영§2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등유 특별소비세 <input type="checkbox"/> 등유 : 181원/ℓ (탄력세율 : 134원/ℓ)	<input type="checkbox"/> 등유 특소세 인하 <input type="checkbox"/> 등 유 : 90원

\* 판매부담금, 부가세 등 제세의 하락 감안시 115원/ℓ 인하

#### <개정이유>

- 농어촌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,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소득역진성 완화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출고분부터 적용

### 2. 바이오디젤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감면 일몰연장(조특법 §111②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바이오디젤(BD) 원액에 대해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비과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세 율 : 528원/ℓ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기한 : '07.12.31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기한 연장 : '10.12.31

<개정이유>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.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(특소법§1②3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되는 경차 범위 ○ 배기량 800cc이하로서 - 길이가 3.5m 이하이고, 폭이 1.5m이하인 것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차 면제 범위 확대 ○ 배기량 1,000cc이하로서 - 길이가 3.6m이하이고, 폭이 1.6m이하인 것

#### <개정이유>

- 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‘03년 개정) 시행에 따라 경차면세 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

#### <적용시기> '08.1.1.부터 적용

### 4.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확대(특소법 §18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렌터카 특 소세 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 초과 → 1년 초과

#### <개정이유> 자동차 리스와의 과세형평을 감안

## 5.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(특소법§1)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세목 : 특별소비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목 : 개별소비세

### <개정이유>

- 자동차, 유류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

\* 특소세 비중('06) : 유류(등유·중유 등 6개 품목) 72.9%, 자동차 20.4%,  
과세장소 5.9%, 보석·귀금속 등 12개 품목 0.8%

<적용시기> '08.1.1.이후부터 적용



# 주세법 · 인지세법 분야





## IX. 주세법/인지세법 분야

### 1.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조정 (주세법 영§21의2)

현 행			개 정 안		
<p>□ 주세가 경감(50%)되는 전통주의 범위</p> <p>○ 경감대상 : 농민주중 과실주(예: 복분자주)</p>			<p>○ 전통주(농민주 + 민속주) 전체로 확대</p>		
	발효주	증류주		발효주	증류주
농민주	과실주(○) 약주(x), 탁주(x), 청주(x)	×	농민주	복분자주, 머루주, 계명주 등	안동소주(일품), 영월더덕주 등
민속주	×	×	민속주	한산소곡주, 금삼인삼주 등	(민속주)안동소주, 전주이강주, 문배주 등
<p>○ 경감기준 : 전년도 500kl 이하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200kl에 한정</p>			<p>○ 경감기준</p> <p>- 발효주(약주·청주·과실주 등) : 최동</p> <p>- 증류주 (소주 등) : 발효주의 1/2</p> <p>· 직전년도 250kl 이하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100kl에 한정</p> <p>※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</p>		

〈적용시기〉 2008.7.1.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

2. 무체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·납부 특례 신설(인지세법 §8의4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무체재산권 양도신청시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·납부 특례 신설 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체재산권 :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

- 민원인이 인지(3천원/건)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인지세를 직접 징수·납부

3. 소규모 제조맥주(Micro Brewery) 판매장소 제한완화  
(주세법 영 별표 3의 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소규모 맥주 판매방법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추 가 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방법 제한 완화 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하여 외부반출 허용 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외부반출 허용

<개정이유>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

<적용시기> 2008.4.1.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